

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9. 9. 23.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. 9. 28.

다. 상정일자 :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2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검토

제3차 본회의 상정, 검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교통안전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,
-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의 교통안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제정 조례안은 「교통안전법」 법률 제8121호(2008. 1. 1)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통안전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및 같은 법 제24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략”+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